

# 기술료 관련 규정과 처리방법

## - 부처별 기술료 운영 및 관리방안 -

2012. 1. 12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덕준

### I. 기술료 규정 - 정부과제 결과물의 기술이전

#### 1. 기술료의 개념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5항

#### 2. 기술료의 운영 및 관리체계

- 우리나라 기술료는 기본적으로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과 부처별 세부규정 (관계 부처장관 훈령 형태)에 따른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관리
- 기술실시계약은 주관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과 성과활용기관(기업) 간에 체결  
실시계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여 징수액 일부(20~50%)를 전문기관에 납부  
(’09년부터 비영리법인인 납부면제)
-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3호)

### 3. 주요 용어 정리(공동관리규정 제2조)

-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산업진흥원 등)
-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을 의미함 )

- [주의점] (1) 기관 간의 협약 없이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개인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은 참여기관이 될 수 없음.  
(2) 참여기관에는 참여기업도 포함됨. (무형적 결과물이 소유권 및 기술실시계약(기술료)의 문제 소지 있음)  
(3) 총괄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그 기업이 세부주관 또는 다른 세부과제의 참여기업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

### 4. 연구결과물의 귀속(공동관리규정 제20조)

- ① 연구기자재, 저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②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의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협동)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⑤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또는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 [주의점] (1)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참여기관(참여기업포함)이 단독 소유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의 문제 소지 있음
-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해야 할 참여기업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
  - 기업이 주관인 경우에, 위탁이나 공동연구기관인 대학에 소유권을 준 경우 등
- (2) 기술료 분담까지 고려한 별도의 협약(\*부가협약)의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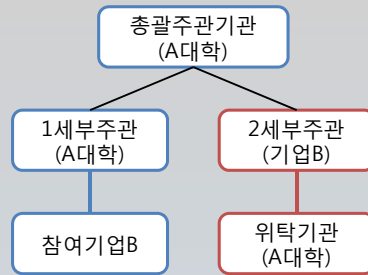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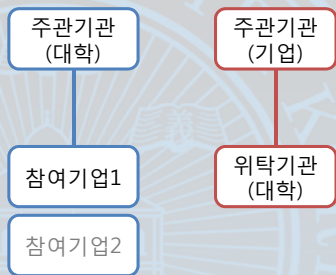
**5. 연구결과물의 귀속 (공동관리규정 제21조)**

-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6. 기술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리규정 제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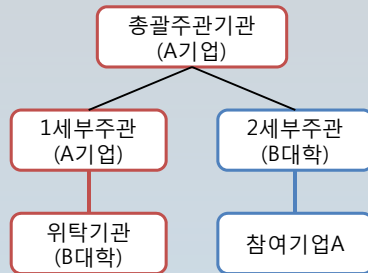
-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연금액 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 ⑤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시계약 보고 시에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⑥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가 기업화된 경우**
  -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 기관 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 5.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소유권 귀속 및 기술료 관련 다양한 협약 형태**



**[이슈]**

- (1) 대학 주관인 경우,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소유권(공동/단독)자인 경우
  -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징수 권한에 문제 발생 여지 있음
- (2) 기업 주관인 경우, 위탁/공동연구기관인 대학이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기업은 전담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 연구결과물을 자기실시할 권한이 있음.
  - 대학에 소유권을 준 연구결과물의 실시는?
  - 별도의 기술료를 대학에 납부해야 하는지?



**8. 기술료 반납 면제(공동관리규정 제19조 및 부칙)**

- 대학의 경우, 2008.5.27 이후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 비영리법인의 경우, 2008.12.31 이후 징수한 기술료

**9. 교과부 - 기초연구사업의 기술료산정관련**

- 2008.12.31이전 협약(별도의 산정기준 없음)
- 2009.1.1이후 현행 처리규정으로 통일적용

**기술료 감면 신청서 작성 예시**

기술료 감면 금액: 기술료 감면금액을 산출한 과정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기술료 산정기준 (정부출연금 이상) 사	1차 감면 조정액 (일부기술 적용) (A)×15%×33%	2차 감면 조정액 (중소기업 감면 적용) (C)×(B)×20%	주관연구기관 조정금액(반)
950,000원	332,500원	99,750원	100,000원

이전대상기술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를 입증하는 산정내역 작성 <예시>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 내용	정부출연금 (원)	비율 (%)	해당여부
1차년도 (2007)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행	50,000	5	
		총 계	300,000		
2차년도 (2008)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50,000	15	○
		○○○시행	100,000	10	
		총 계	400,000		
3차년도 (2009)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행	50,000	5	
		총 계	300,000		
		계	1,000,000	100	
		이전대상기술 관련 연구비 및 비용	350,000	35	

**10. 교과부 - 다년도 과제외의 경우의 정부출연금 기준**

- 전체 연구기간이 아닌 **이전기술 획득과 관련하여 연구한 연구연도의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함**
- **계약서에 확정된 금액으로 명시된 기술료 총액이 정부출연금 이상이어야 함. (정액기술료, 변동기술료 중 선급기술료)**
- (경상기술료(매출액%)가 있으나 최저기술료를 병행하는 경우는?)

**11. 기술료 일부감면 신청서 샘플**

## II. 기술료 규정 - 국가별 비교

※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12) - "국가R&D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주요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베이-돌법 (특허법) 연방기술이전법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 대학등기술이전 촉진법 (TLO법)	중입원발명법
성과귀속	주관연구기관 (일부는 정부소유)	주관연구기관	국가 또는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술료 산정기준	부처마다 다름 (정부가 정한 기준)	기술의 시장가치 (관련 규정 無)	기술의 시장가치 (관련 규정 無)	기술의 시장가치 (관련 규정 無)
기술료 사용기준	정부가 정한 기준	주관연구기관 자율 (연방특허는 정부기준) (관련 규정 無)	주관연구기관 자율 (국유특허는 정부기준) (관련 규정 無)	주관연구기관 자율 (관련 규정 無)
징수기술료 정부환수제도	有	無	無	無

출처: 송충환 외(2008)

- 기술료 산정 및 사용, 정부환수 제도 없음
- 주관연구기관에 기술료 산정/사용 권한 부여
-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술료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 국내 IP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

### ■ 기술료 징수방법 개선

- 시장원리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징수하도록 기술료 징수방식을 개선
- 기술실시 계약 시 기존 확인와원 출원장률제 방식에서 주관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징수방식(출원, 매출, 출원+매출)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
- 향후 시장가치를 장기적으로 반영한 매출장률제 중심으로 유도

## II. 기술료 규정 - 부처별 비교

[부처별 기술료 관련 규정]

부처	관리규정	징수대상	징수금액	징수시기	기술료 보고양식
고과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09.12.30)	기술실시 계약체결 과제	출연금 이상	기술실시계약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있음 [징수결과, 사용실적]
지경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09.1.1)	"조기완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판정 과제	○ 정액 - 중소기업: 출연금의 20% - 대기업: 출연금의 40% ○ 경상: 매출액의 5%이내	- 정액기술료 : 기술실시계약체결일 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 - 경상기술료 : 기술실시계약체결일 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실시기업 인 경우 7년이내)	있음 [징수결과, 사용실적]
행안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 처리규정 (09.8.25)	기술실시 계약체결 과제	출연금 이상	기술실시계약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 으로부터 5년 이내	있음 [징수결과, 사용실적]

- 부처별로 기술료 관리규정과 내용이 차이가 있음.
- 시장가치 반영한 기술료산정이나 합리적인 협상에 소요될 시간을 규정검토 및 그에 따른 처리 등에 업무량 집중됨.
- 부처별로 상이한 해석과 처리에 따른 불합리 존재

부처	관리규정	징수대상	징수금액	징수시기	기술료 보고양식
문위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규정 (10.3.23)	기술실시 계약체결 과제	출연금의 30% 이내 (중소기업은 20% 이내)	5년연위에서 분할납부 *문화산업진흥기법법 시행령 제25조의 3	없음
농림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10.2.22)	기술실시 계약체결 과제	출연금액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	없음 (중흥관리 규정 준용)
복지부	보건의료 기술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 (09.1.5)	"발광"으로 평가된 과제를 제외한 모든 과제	비영리기관: 출연금의 20%이상 영리기관: 출연금의 30%이상	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없음
환경부	환경기술 개발사업 운영규정 (09.8.18)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 과제	비영리기관: 출연금의 20%이상 영리기관: 출연금의 30%이상 실증회사업과제: 출연금의60%	기술실시계약체결시점 부터 5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	없음
국토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 (09.2.11)	기술실시계약체결과제	출연금 이상	전문기관장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장과 실시간협약에 따라 결정	없음
국방부	민·군겸용 기술사업 공동 시행규정 (09.10.7)	기술실시계약체결과제	- 중소기업: 출연금의 20% - 대기업: 출연금의 40%	- 중소기업: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 대기업: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있음 [징수결과, 사용실적]
방재청	소방방재청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08.7.24)	기술실시계약체결과제	출연금 이상	기술실시계약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 으로부터 5년 이내	있음

## II. 기술료 규정 - 기술료 사용

부처	관리규정	징수대상	징수금액	징수시기	기술료 보고양식
농진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개발 공동연구 사업 운영규정 (’09.12.3)	기술실시계 약체결과제	출연금 범위 내	당해제품의 매출액 발 생시점부터 5년 이내	있음 [징수결과, 사용실적]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09.12.31)	기술실시계 약체결과제	출연금 이상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	있음 [징수결과, 사용실적]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10.2.1)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	출연금의 20%	3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	일부 있음 (납부계획서)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09.2.29)	기술실시계 약체결과제	출연금 이상	기술실시계약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 으로부터 5년 이내	있음 [징수결과, 사용실적]
방사청	국립과학 기술원 선정· 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10.4.27)	기술실시계 약체결과제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2% -(경상)제품단위 당 순 판매가격의 2~3% - 단위당 순판매가 의 3% - 순수출가격의 5%	- 방산물자 수출 : 수출 로 인한 납품 후 1월 이내 - 민수품 생산 : 제품 생산한 다음연도 1월 말까지 - 기술수출계약 체결 :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	없음

구분	기술료 사용처	사용비율
비영리 법인	기술 실시 계약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자가 실시 계약	● 연구개발 제투자, 기관운영, 지적권 출원·등록 비용,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의 나머지
	자가 실시 계약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의 50% 이내
영리법 인	기술 실시 계약	● 전문기관에 납부 정부출연금 지분의 30% 이상의 나머지
	기술 실시 계약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정부출연금 지분의 35% 이상의 나머지
	자가 실시 계약	● 연구개발 제투자, 기관운영, 지적권 출원·등록 비용,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출연금 지분의 35% 이상의 나머지
자가 실시 계약	●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 운영경비 ● 기술확산에 기여한 연구기관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의 50% 이내	

### III 기술료 법정지출항목 간 우선순위 재조정

- 공동관리규정 상의 법정지출 항목에 대한 지출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성과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기술이전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 등 성과확산에 필요한 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충함으로써 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
- 기술이전에 따른 성과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동관리규정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비율(비영리 50%, 영리 35%)을 재조정
- \* 공동관리규정의 참여연구원 보상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규정(50%)은 미국(15%), 일본(30% 미만)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큰 비중 차지

※ 설문조사 결과 연구개발 성과확산 관련 제반비용을 제외한 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 중 연구자 인센티브 비중을 50%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2.1%로 나타났다

10/11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011.9.5 시행 개정내용

###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 ② 무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성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물의 경우 (...이하 생략)
-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이 수행한 성과물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 \*정액기술료(통합요령 제7-10조)

- 기술료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계약
-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
- 5년 이내 균등분할 원칙, 30일 이내 40%감면, 1-3차년도 내 30-10%감면

### \*경상기술료(통합요령 제12조) - 주관이 비영리인 경우에 우선적용

- 징수기간 :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사업인 경우 7년 이내)
- 착수기분료 : 출연금의 10% 이내 (중기 50%감면가능, 참여기업 면제가능)
- 기술료율 : 대기업 매출액 5% 이내, 중견기업 3.75%/중소기업 2.5% 이내

- ②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③ < 삭제 > 위탁기관 관리대상에서 제외  
: " 위탁기관이 소유 경우, 기술료 문제 발생 "

- 10년
- 10% (납부기간에 따른 감면적용)
- 5%, 3.75%/2.5%
- : "요율 고정이 오히려 산학협력의 걸림돌 작용가능"

### 기술료 제도 개선안

개선후	현행
·연구결과물 소유기관과 기술 실시기간 간 기술료(Royalty)는 계약자를 원칙 적용 -단, 권고기준 제시(정부출연금 이상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90%, 중견기업 70%, 대기업 60% 감면 가능)	·공통기준 없으며, 부처별 기술료 징수방법, 시기, 금액 등 기준 상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영리법인의 제3자 실시의 경우 징수된 기술료(Royalty) 중 정부출연금지분의 30% 납부 -영리법인의 자기실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경비율(중소 10%, 중견 30%, 대기업 40%) 납부	
·현행 조기납부 감면제도를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 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부처별로 조기납부시 감면(10-40%)제도 운영중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료 제도개선안을 확정
- 2012년 상반기에 공동관리규정 개정 예정
-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 기준의 표준화 추진
- 기술료는 계약자율원칙으로 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권고기준을 제시할 예정임.

11/11



감사합니다.

djahn@konkuk.ac.kr

2012. 1. 12